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학생회칙

2014년 3월 5일 제정
2015년 11월 23일 부분개정
2017년 4월 3일 전면개정
2018년 9월 17일 전면개정
2019년 6월 3일 부분개정
2020년 11월 3일 부분개정
2024년 3월 4일 부분개정
2025년 9월 1일 부분개정

제1장 총칙	2-3
제2장 집행기구	
제1절 약학대학 학생회장	3-5
제2절 약학대학 집행위원회	5-6
제3절 약학대학 비상대책위원회	6-7
제3장 의사결정기구	
제1절 약학대학 학생총회	7-8
제2절 약학대학 학생대표자회(단학대회)	8-10
제3절 약학대학 운영위원회(단운위)	10
제4장 특별기구	10-12
제5장 약학대학 동아리	12-13
제6장 재정	
제1절 자원 및 회계·심의	13-14
제2절 약학대학 재정운영위원회(재운위)	14-15
제7장 선거 및 투표	15-16
제8장 약학대학 인수인계위원회	16-17
제9장 회칙개정	17-18
제10장 약학대학 징계위원회	18-25
부칙	25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학생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 ① 본회는 회원들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학생자치활동을 통하여 학문 탐구와 자주적 대학 문화를 창조한다.
- ② 본회는 회원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를 대변하며, 권리를 증진함으로써 학문적 진리를 추구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제3조 [소재지]

본회는 고려대학교 안에 둔다.

제4조 [회원의 자격]

- ① 본회의 회원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학부과정에 소속 중인자로 한다.
- ② 졸업·자퇴·퇴학 등으로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학부과정 소속이 아니게 된 자는 그 즉시 회원 자격을 잃으며, 정학 등의 사유로 등교가 정지된 자는 그동안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단, 회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자는 약학대학 학생 대표자회의 의결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회원으로 인준 받을 수 있다.
- ③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학부 재학생은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 ④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학부 휴학생은 휴학 기간 동안 정회원의 자격을 잃고 준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 ⑤ 이중 전공생, 복수 전공생 및 캠퍼스 내 소속 변경 학생(전과)은 준회원의 자격을 가진다.

제5조 [회원의 의무]

- ① 본회의 회원은 대학의 자치와 본회를 수호할 의무를 가진다.

제6조 [회원의 권리]

- ①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의거하여 본회의 각종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단, 준회원은 이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 ②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하고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합법적 활동과 관련된 사항으로 어떤 불이익과 처분도 받지 않는다.
- ③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운영 전반에 관련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7조 [기구]

본회는 민주적인 운영을 통한 학생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의 의사결정기구, 집행기구, 특별기구를 둔다.

- 의사결정기구 : 약학대학 학생총회, 약학대학 학생 대표자회
- 집행기구 : 약학대학 학생회장, 약학대학 집행위원회, 약학대학 운영위원회, 약학대학 비상대책위원회
- 특별기구

제8조 [학교 당국과의 관계]

- ① 본회는 학교당국에 대하여 독립적, 자율적 지위를 갖는다.
- ② 본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당국과 협의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 각 기구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학교당국과 협의 조정할 수 있다.
- ③ 본회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본회는 다음과 같은 안건을 심의하는 학교당국의 제반 회의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가 있다.
 - 본회활동에 관련한 회원의 징계사정에 관한 사항
 - 회원의 후생복지와 자치에 관한 사항
 - 학생활동 및 학생 신분에 관련된 학칙개정에 관한 사항
 - 기타 약학대학 학생 대표자회와 학교당국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 ④ 본회의 제반 회의에서는 그 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학교당국에 그 회의에 참석할 것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장 집행기구

제1절 약학대학 학생회장

제9조 [지위]

- ①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약학대학 학생총회, 약학대학 학생대표자 회의의 의장이 된다.
- ② 학생회장 궐위 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는 현 약학대학 학생회 재무국장,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 중앙운영위원회는 현 약학과 학생회장이 대행한다.
- ③ 사퇴, 탄핵, 자퇴 등 선출 이후에 학생회장직에 공석이 생긴 경우를 '궐위' 상태로 정의한다.
- ④ 약학대학 비상대책위원회 시행 조건은 제2장 제3절에서 정의한 내용으로 한다.

제10조 [의사결정기구 관련 권한]

학생회장은 약학대학 학생총회, 약학대학 학생 대표자회 등 의결기구를 운영한다.

제11조 [집행기구 관련 권한]

- ① 학생회장은 본회의 전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본회 사무의 집행을 총괄한다.
- ② 학생회장은 약학대학 집행위원회의 구성권을 가진다.
- ③ 학생회장은 약학대학 집행위원회 산하 국의 국장과 국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
- ④ 학생회장은 약학대학 집행위원회 산하 국을 지휘·감독한다.

- ⑤ 학생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의 효율적 업무 집행을 위하여 직속 위원회를 설치하여 지휘·감독할 수 있으며, 직속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임면권을 가진다.

제12조 [대외적 권한]

- ① 학생회장은 학생자치활동에 관계되는 학교 행정의 문제에 대해 회원의 의사를 대변하며 학교 당국에 의사를 개진하며, 필요할 때 각종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 ② 학생회장이 약학과일 경우, 임기 동안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중앙운영위원,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의 중앙운영위원으로서 활동한다. 그렇지 아닐 경우,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중앙운영위원으로서 활동한다.
- ③ 학생회장은 본회와 본회의 회원과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이 회를 대표하여 대외적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등의 대외활동을 할 수 있다. 단, 본회 차원의 단체 가입과 대외적 협의, 본회의 재정적 지출을 수반하는 등의 본회의 회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약학대학 학생 대표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의무]

- ① 학생회장은 회원들의 의사를 수렴하여 민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학생회장은 본회의 대표로서 약학대학 학생총회,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전체학생대표자회의,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 등에 본회의 모든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 ③ 학생회장은 본회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학생회장은 본회와 본회 산하기구의 각종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학생회장은 후임 학생회장의 선출과 후임 학생회장으로의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져 후임 학생회장의 업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 [임기]

- ① 학생회장의 임기는 선거 실시 차기년도 1월 1일부터 차기년도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단, 재선거·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되었을 경우 당선 공고일로부터 48시간 이후부터 임기를 시작하여 그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학생회장은 후임 학생회장 선거에서 학생회장 후보로 입후보할 수 없다.

제15조 [선서]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선서를 당선 후 개표장에서 행한다.

“본인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학생회장으로서 회칙을 준수하며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16조 [신분보장]

학생회장은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직에서 해임되지 않는다.

제17조 [사퇴]

- ① 학생회장이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약학대학 학생 대표자회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 ② 학생회장이 사퇴한 경우 현 약학대학 학생회 재무국장이 그 직을 승계한다.
- ③ 현 약학대학 학생회 재무국장이 사퇴한 경우 약학대학 집행위원회 자체의 논의를 통해 집행위원회의 국장 중 한 명이 그 직을 승계한다.

제18조 [탄핵]

- ① 학생회장에 대한 탄핵안은 다음 중 하나에 의해 발의할 수 있다.
 - 약학대학 학생 대표자회 1/2 이상의 연서
 - 약학대학 회원 1/5 이상의 연서
- ② 탄핵안이 발의될 경우, 3일 이내에 약학대학 학생대표자회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여 제2항의 연서를 심의한다. 이 때, 약학대학 학생대표자회 의장이 회의 소집을 거부한 때에는 약학대학 학생대표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약학대학 학생대표자회 대의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개의 직후 임시의장을 선출한다.
- ③ 약학대학 학생 대표자회는 탄핵안 발의 5일 이내에 약학대학 학생총회를 소집하여 탄핵안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이 때 약학대학 학생총회의 의장은 제36조 제3항에 의거한다.
- ④ 약학대학 학생총회는 제39조 제2항과 제40조 제4항에 따라 탄핵안을 의결한다.
- ⑤ 학생회장이 탄핵된 경우, 현 약학대학 학생회 재무국장이 그 직을 승계한다.
- ⑥ 탄핵안이 발의된 이후부터 탄핵안의 대상은 탄핵안의 의결여부가 부결되기 전까지 모든 직무가 정지된다.

제2절 약학대학 집행위원회

제19조 [지위]

약학대학 집행위원회(이하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제20조 [구성]

- ① 약대집행위원회의 체계는 약학대학 인수인계위원회에서 구성하고 약학대학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인준한다.
- ② 약대집행위원회는 각 집행국장 및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 [집행국]

- ① 집행위원회는 원활한 업무 집행을 위해 산하에 집행국을 둘 수 있다.
- ② 집행국의 구성은 인수인계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완료되어야 한다.
- ③ 집행국의 구성은 학생회장의 판단 하에 신설 및 폐지를 할 수 있으며, 최대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지위를 인정받아 활동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 [집행국장 및 집행국원]

- ① 약대집행위원회의 각 집행국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이 회 사무의 집행에 관하여 약학대학 학생회장의 지시에 따라 각 집행국을 관리·감독한다.
- ② 각 국의 국원은 공고를 내어 모집할 수 있다.
- ③ 모집 시기는 학생회장이 적절한 시기에 필요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 ④ 약대집행위원회의 위원들은 약학대학 학생회장이 임명하여 업무를 개시한다.

제23조 [운영]

- ① 집행위원회 회의는 월 1회의 정기회의를 기본으로 한다. 단, 필요시 학생회장단 또는 집행위원회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② 집행위원회 회의는 집행위원의 2/3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한다.
- ③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집행위원회 재적인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 [의무]

집행위원회의 국장 및 국원들은 본 회의 전체사업을 협의해나갈 때 해당국 또는 회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의결에 반영할 의무가 있다.

제25조 [업무 및 권한]

- ① 집행위원회는 이 회의 사업 집행 전반을 담당한다.
- ② 집행위원회는 약학대학 학생총회, 약학대학 학생대표자회가 결정한 업무를 집행한다.
- ③ 집행위원회는 학생회장이 결정한 업무를 집행한다.
- ④ 집행위원회는 약학대학 학생총회, 약학대학 학생대표자회의 개의·시행을 준비하고, 이에 사용되는 각종 자료를 제작해야 한다.
- ⑤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예산 및 결산을 작성하여 약학대학 학생총회, 약학대학 학생 대표자회, 약학대학 감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3절 약학대학 비상대책위원회

제26조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시 즉시 약학대학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하여야 한다.

- 현 학생회장이 탄핵된 경우
- 차기 학생회장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
- 투표율 미달로 개표가 불가능한 경우

제27조 [위원장]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전 약학대학 학생회 국장단 중 1인으로 하며 이는 학생회장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다만,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 중앙운영위원회 역할은 현 약학과 학생회장이 맡는다.

제28조 [권한 및 업무]

- ① 비상대책위원회장은 학생회장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갖는다.
- ② 비상대책위원회는 본칙 제2장 제2절 약학대학 집행위원회에 준하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다.

제29조 [임기]

- ①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차기 학생회장의 선출일 이후 2일까지로 한다.
- ② 부득이하게 보궐선거 또는 재투표를 통하여 학생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 약학대학 학생대표자회에서 논의를 통하여 권한대행을 지정한다.
- ③ 보궐선거, 재투표를 통해 선출된 학생회장 또는 제2항에 의거하여 지정된 권한대행의 임기는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장 의사결정기구

제1절 약학대학 학생총회

제30조 [지위 및 구성]

- ① 약학대학 학생총회(이하 학생총회)는 약학대학 최고 의결 기구이다.
- ② 학생총회는 제1장 제4조에 규정된 회원 전체로 구성된다.

제31조 [의장]

- ① 학생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는다.
- ② 학생회장 궐위 시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장직을 맡는다.
- ③ 다음의 경우에는 약학대학 학생대표자회의 구성원 중 1명을 선출해 임시의장직을 수행하고, 해당 학생총회 개의 직후 인준을 받는다.
 - 학생회장 탄핵 안건이 상정된 경우

제32조 [권한]

- ① 회칙 부분 개정 및 폐지에 관해 의결할 수 있다.
- ② 본회의 존립, 폐지 및 회원전체에 대한 중대 사항에 대해 의결할 수 있다.
- ③ 본회의 활동 전반에 대한 중대 사항에 대해 의결할 수 있다.
- ④ 예산, 결산 보고에 대한 청취권을 갖고 있다.
- ⑤ 교내행사 및 교외행사와 관련한 의제와 관련한 모든 최종 의결권을 갖고 있다.
- ⑥ 학생회장이 회칙을 중대히 어겼거나 업무수행 상 심히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때 학생회장 탄핵에 대해 의결할 수 있다.

제33조 [소집]

- ① 학생총회는 다음의 경우 중 하나에 의해 학생총회 의장이 소집한다.
 - 약학대학 집행위원회 2/3 이상의 소집요구
 - 약학대학 학생 대표자회 1/2 이상의 소집요구
 - 약학대학 회원 1/5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 요구
- ②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 학생총회의 의장은 학생총회를 즉시 소집할 수 있다.
- ③ 소집요구에 의해 학생총회 의장은 소집을 개의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제38조 제2항에 따른 소집은 예외로 한다.

- ④ 공고문에는 회의 시작 일시, 회의장소, 안건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4조 [개의 및 의결]

- ① 학생총회는 재적 회원 1/3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한다.
- ② 의결권은 제3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출석회원의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탄핵 안건의 경우 출석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탄핵의 경우에는 2/3의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한다.)
- ③ 학생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3일 내로 전체 회원들에게 공개한다.

제35조 [표결방법]

- ① 표결은 거수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때 각 안건에 대하여 거수를 한 회원의 명단은 기록하지 아니하며, 그 총수만을 기록한다.
- ②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이 제의하여 학생총회에서 의결하면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
- ③ 다음의 경우는 반드시 기명투표로 표결하여야 한다.
 - 회칙개정 관련 사항
- ④ 다음의 경우는 반드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여야 한다.
 - 학생회장 탄핵안에 관한 사항
 - 징계에 관한 사항

제36조 [안건]

- ① 학생총회는 다음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 약학대학 집행위원회 2/3 이상의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 약학대학 학생 대표자회 1/2 이상의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 약학대학 회원 1/5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 ② 학생총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안건은 의결을 통해 학생 대표자회의로 위임할 수 있다. 단, 탄핵안의 경우는 위임할 수 없다.
- ③ 개의하지 못한 학생총회에 발의된 안건은 위임하지 아니하고 폐기한다.

제2절 약학대학 학생대표자회(단학대회)

제37조 [지위]

약학대학 학생대표자회(이하 단학대회)는 제39장 제1조에 의거하여 학생총회가 열리지 못할 경우 최고 결정권을 위임 받는 최고 의결 기구이다.

제38조 [대의원 구성]

- ① 약학대학 단학대회는 다음의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단, 예외적으로 인정되어 의결 권한을 갖는 대표자 자격을 새로이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의결을 통해 임시 대표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약학대학 학생회장
 - 집행위원회 집행국장

- 학과 학생회장
 - 각 학년대표 1인
 - 약학대학 동아리 대표
- ② 약학대학 학생대표자회의에 참여하는 약학대학 동아리 대표는 해당학기 약학대학 동아리 연합회 소속 동아리 회장들로 구성된다.
 - ③ 약학대학 학생대표자회의의 대의원들은 제1항의 자격 중 하나의 자격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
 - ④ 학생대표자 자격이 중복되는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고, 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인준을 통해 그 대리인에 대해 자격을 부여한다.

제39조 [대의원의무]

- ① 대의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대의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구의 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사 과정 전반에서 기구를 대표하는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 ③ 대의원은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제40조 [의장]

- ① 의장은 학생대표자회의의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대외적으로 학생대표자회를 대표한다.
- ② 의장은 학생회장이 당연직으로 한다.
- ③ 학생회장 궐위 시 비상대책위원장이 의장직을 맡는다.

제41조 [소집]

- ① 정기회의는 매학기 1회 적절한 시기에 의장이 소집한다.
- ② 임시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 의장의 소집요구
 - 대의원 1/4 이상의 소집요구
 - 집행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구
 - 약학대학 회원 1/8 이상의 연서에 따른 소집 요구
- ③ 의장은 학생대표자회의의 7일 전에 학생대표자회를 공고한다.
- ④ 공고문에는 회의 시작 일시, 회의장소, 안건과 안건에 대한 설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2조 [업무 및 권한]

- ① 업무집행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 심의 조정한다.
- ② 회칙 부분 개정 및 폐지의 관한 의결 또는 회칙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다.
- ③ 집행위원회 전체 예산을 검토, 심의 조정하여 학생총회에 상정한다.
- ④ 집행위원회 제반 사업을 검토, 조정, 심의, 의결한다.
- ⑤ 회의 진행에 필요한 집행위원회 서류 및 본회 구성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기타 학생총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은 제반사항을 의결한다.
- ⑦ 학생총회를 요구할 수 있다.

제43조 [개의 및 의결]

- ① 약학대학 학생대표자회의는 재적의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단, 신규 약학대학 동아리 등록 및 인준에 관한 의결은 제62조에 따른다.
- ② 학생대표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3일 내로 전체 회원들에게 공개한다.

제44조 [표결방법]

- ① 표결은 거수로 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때 각 안건에 대하여 거수를 한 회원의 명단은 기록하지 아니하며, 그 총수만을 기록한다.
- ②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 또는 대의원이 제의하여 학생대표자회가 의결하면 표결을 무기명으로 할 수 있다.

제45조 [안건]

- ① 학생대표자회는 다음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 의장의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 학생대표자회 대의원 1/4 이상의 소집요구와 함께 발의한 안건
 - 제41조 제2항에 따라 학생총회에서 위임된 안건
- ② 개의하지 못한 학생대표자회에 발의된 안건은 위임하지 아니하고 폐기한다.

제3절 약학대학 운영위원회(단운위)

제46조 [지위]

약학대학 운영위원회(이하 단운위)는 본회의 의결기구이자 집행기구이다.

제47조 [구성]

약학대학 운영위원회는 최소 약학대학 학생회장과 각 과 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제48조 [의장]

약학대학 학생회장이 약학대학 운영위원회 의장직을 맡는다.

제49조 [업무 및 권한]

- ① 약학대학 제반 사업을 운영한다. 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사항을 결정한다.
- ② 과반수의 발의로 약학대학 학생 대표자회의나 약학대학 학생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운영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각 과 학생회 사업 보고와, 집행위원회의 활동을 보고 받는다.

제4장 특별기구

제50조 [지위]

- ① 약학대학 특별기구(이하 특별기구)는 특수한 영역과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상설기구이다.
- ② 특별기구는 학생회장과 집행위원회로부터 독립적인 위상을 보장받는다.

제51조 [성립]

특별기구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설치된다.

- 전문적 영역을 갖고 활동을 꾸준히 수행하여 자치단체로서의 정체성이 확보되어 있는 단체
- 본회 차원의 포괄적·대외적 사업이 필요한 분야에 관련된 단체
- 특정 분야에 관련된 자치단체들의 연합 단체 또는 대표 단체

제52조 [심의]

- ① 학생대표자회는 특별기구 인준 요청이 있으면 다음의 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단체가 제 52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제출받은 서류에 문제가 없는지를 심의한다.
 - 회원명부
 - 소개서
 - 사업계획서
 - 약학대학 학생회칙 준수서약서
 - 자치규칙
 - 예산안
 - 정회원 1/10 이상의 추천이 있는 추천서
- ② 학생대표자회는 심의 후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단체의 특별기구 인준을 의결한다.
- ③ 제1항의 자치규칙에는 성립 목적, 대표 선출 과정,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공정하고 투명한 회원 선발 절차와 기준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모든 특별기구는 매년 1학기 개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학생대표자회에 전년도 활동내용을 제출하여 재심의를 받는다. 이 때, 재심의에 대한 의결은 제2항을 따르도록 한다.

제53조 [협의]

- ① 특별기구는 사업의 기획과 집행에 있어 필요할 때 집행위원회와 협의한다.
- ② 집행위원회는 필요한 때 특별기구의 장 혹은 특정 업무 담당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특별기구는 필요한 때 집행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을 제안하거나 협의할 수 있다.

제54조 [재정]

- ① 특별기구는 약학대학 학생회비에서 예산을 배분 받는다.
- ② 특별기구는 예산 배분에 관한 결정이 이뤄지는 각종 절차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 ③ 특별기구는 제70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안을 작성하여 약학대학 감사위원회 개의 예정일 3일 전까지 약학대학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 [징계]

- ①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할 때 학생대표자회의는 해당 특별기구에 경고하고 약학대학 학생회비 배분액을 삭감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와 사전 연락 없이 제71조 제2항의 예산·결산안을 약학대학 감사위원회 개의 예정일 3일 전까지 약학대학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을 때
 - 약학대학 감사위원회의 예산·결산안 심의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되거나 부실한 부분이 드러날 때
 - 회원의 부재가 계속되어 활동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 기구의 성격·활동이 성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때
 - 특별기구가 회칙을 위반할 때
- ② 예산·결산안 미제출과 관련한 사유에 관하여 특별기구의 해명이 필요하다면 학생대표자회의는 해당 특별기구에 기한을 정하여 해명을 요구할 수 있다. 해명이 있으면 해명 내용을 참작하여 경고 여부를 다시 판단하고, 해명이 없거나 부실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경고를 한다.
- ③ 특별기구가 다음 중 하나 이상 해당되면 학생대표자회의는 해당 특별기구를 해산시킬 수 있다.
 - 경고 후 1년 내에 추가로 경고를 받을 때(이전의 경고는 경고를 받은 회기의 종료일까지 유효하다)
 - 다른 기구에 편입되거나 자체적으로 해산을 공표할 때
 - 본회 차원에서 특별기구가 담당하는 영역과 기능을 포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 ④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는 징계 의결 후 48시간 이내에 가능하고, 학생대표자회의는 이의제기가 된 당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의 해야 한다. 이 때,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는 1회로 제한한다.

제56조 [자치규칙]

- ① 특별기구는 자치규칙을 제정하여 모든 사항을 규정한다.
- ② 특별기구가 자치규칙을 개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학생대표자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약학대학 동아리

제57조 [지위]

약학대학 동아리(이하 동아리)는 이 회의 회원으로 구성된 특정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자치단체이다.

제58조 [회원 및 회장]

- ① 동아리에 소속된 이 회의 재학생·휴학생은 해당 동아리의 회원이 된다.
- ② 동아리의 회원은 해당 동아리 회장 선출과 관련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 ③ 동아리 회장은 해당 동아리 자치규칙에 따라 선출될 수 있다.

제59조 [운영 및 권한]

- ① 동아리의 활동 및 운영은 본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아리 자치규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 ② 등록된 동아리는 활동에 필요한 예산 및 공간을 집행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60조 [약학대학 동아리연합회]

- ① 약학대학 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 회장들로 구성된다.

제61조 [등록 및 인준]

- ① 신규 동아리의 등록을 위해서는 한 학기 이상의 소모임 활동을 전제한다.
- ② 신규 동아리의 등록을 위해서는 동아리 승인 인준서를 작성하여 학생대표자회의 3일 전까지 집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동아리 승인 인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동아리 명, 설립목적
 - 대표자 명, 5인 이상 회원의 명단, 학번 및 서명
 - 지난 활동내역 및 차학기 활동계획
- ③ 신규 동아리의 등록은 매학기 학생대표자회 중 출석의원 2/3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 ④ 등록된 동아리는 자체 결정에 따라 집행위원회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다. 동아리 등록말소 요청 시 다음의 내용을 제출하며 집행위원회는 이를 즉시 처리한다.
 - 동아리 명
 - 대표자 명
 - 등록말소요청 사유

제62조 [제명]

- ① 본회의 목적 및 제반 민주적 관례에 심각히 반하거나 명백한 활동이 없이 해산되었다고 판단되는 동아리, 동아리 인준서를 미제출한 동아리는 학생대표자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
- ② 제명은 학생대표자회의 중 출석의원 2/3의 찬성에 의해 의결한다.
- ③ 제명된 동아리는 집행위원회로부터 예산 및 공간을 지원받을 수 없다.
- ④ 동아리 등록 후 12주 이하 운영 후 제명 시, 해당 동아리는 지원금을 전액 반납해야한다.

제6장 재정

제1절 자원 및 회계·심의

제63조 [원칙]

본회의 각 기구는 재정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하여야 한다.

제64조 [자원]

- ① 본회의 자원은 학생회비와 비정기 수입으로 충당하며 본회가 구성한 활동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다.
- ② 비정기 수입은 학생회비 이외의 총학생회비에서 일부 지원받는 금액, 사업별 후원금, 그

밖에 수익금으로 구성된다.

- ③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 집행한다.

제65조 [학생회비 집행의 원칙]

- ① 약학대학 학생회비는 이 회 각 기구의 운영, 사업, 홍보 등에 사용된다.
- ② 약학대학 학생회비는 각 기구에 소속된 위원의 편익을 위해서는 운용될 수 없다. 단, 업무 등을 위해 필요한 지출이라고 인정될 때는 일부 또는 전부를 집행할 수 있다.
- ③ 약학대학 학생회비의 집행은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약학대학 학생회비 집행권한을 갖는 자는 다음과 같다.
 - 약학대학 학생회장
 - 약학대학 집행위원회
- ⑥ 약학대학 학생회비의 집행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만약 운용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이는 전액 회원들을 위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제66조 [학생회비]

- ① 학생대표자회에서 약학대학 학생회비의 인상·인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회비 조정에 관하여 논의할 수 있다.

제67조 [회계연도]

-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해 2학기 종강 익일부터 이듬해 2학기 종강일까지로 한다.
- ②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기간으로 나누어 집행하고 결산한다.
 - 1분기: 전년도 2학기 종강 익일부터 금년도 1학기 개강 전날까지
 - 2분기: 1학기 개강일부터 1학기 종강일까지
 - 3분기: 1학기 종강 익일부터 2학기 개강 전날까지
 - 4분기: 2학기 개강일부터 2학기 종강일까지

제68조 [예산 및 결산]

- ① 약학대학 집행위원회는 다음에 따라 예산·결산안을 작성하여 약학대학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한다.
 - 1학기 종강일까지: 금년도 1분기의 결산안, 금년도 2분기의 결산안, 금년도 3분기의 예산안, 금년도 4분기의 예산안
 - 2학기 종강일까지: 금년도 3분기의 결산안, 금년도 4분기의 결산안

제2절 약학대학 재정운영위원회(재운위)

제69조 [지위 및 구성]

- ① 약학대학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는 약학대학 내 학과들의 학생회비 및 비정기회비의 회계를 감사한다.
- ② 약학대학 감사위원회는 약학대학 학생대표자회의 과반수의 의결에 따라 위촉된 약학대학 회원으로 구성한다. 약학대학 감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약학대학 학생회장
 - 각 학과 학생회장
 - 각 학과 재정 담당 국장
- ③ 재정운영위원장은 약학대학 회장이 맡는다.
 - ④ 약학대학 재정운영위원회는 연 2회 진행하며, 각 학기 종강일전까지 반드시 구성되어야 하며, 구성 3일 내에 활동을 시작하여 1주간 활동한다.
 - ⑤ 약학대학 감사위원회는 약학대학 학생대표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 특별히 구성되어 2주내로 활동할 수 있다.

제70조 [사전 심의 및 보고]

- ① 약학대학 내 학과별 재정 담당 국장은 다음에 따라 해당 연도의 예산·결산안 및 학생회비 계좌 입·출금 내역을 매학기 약학대학 재정운영위원회의 개의 예정일 24시간 전까지 약학대학 재정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약학대학 재정운영위원회의 1학기 회기 : 금년도 1분기의 예산·결산안, 금년도 2분기의 예산·결산안, 및 금년도 1분기의 입·출금내역, 금년도 2분기의 입·출금내역
 - 약학대학 감사위원회의 2학기 회기 : 금년도 3분기의 예산·결산안, 금년도 4분기의 예산·결산안 및 금년도 3분기의 입·출금내역, 금년도 4분기의 입·출금내역
- ② 특별기구는 다음에 따라 예산·결산안을 작성하여 2학기 약학대학 재정운영위원회 개의 예정일 24시간 전까지 약학대학 감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약학대학 재정운영위원회 2학기 회기 : 금년도 1~4분기의 결산안
- ③ 약학대학 재정운영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학생회비의 예산·결산안을 사전 심의한다.
- ④ 약학대학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한 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다음 학기 개강일 전까지 작성하여 약학대학 온라인 플랫폼에 감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감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감사위원회 구성, 활동기간, 감사목적
 - 약학대학 학과 학생회비 및 비정기회비 회계 상황
 - 약학대학 집행위원회 또는 약학대학 특별기구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
 - 기타 감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⑤ 약학대학 재정운영위원회가 감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횡령, 장부 조작 등)을 발견하면 약학대학 학생대표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에는 감사보고서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해당 학과 학생회장은 경위서를 작성하여 학과 학생들에게 위법사항을 보고한다.

제7장 선거 및 투표

제71조 [선출]

- ① 학생회장단은 비밀, 보통, 평등에 기반을 둔 본회 회원의 직접선거로 선출된다.

제72조 [시기]

- ① 학생회장 선거일정은 매년 11월에 시행함을 그 원칙으로 한다. 세부 일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② 학생회장 선거가 무산되는 경우 다음해 3월 중에 재선거를 실시하며 그 이전까지는 제 34조 1항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에 의해 운영된다.

제73조 [선거권과 피선거권]

- ① 본회의 정회원은 학생회장 선거의 선거권이 있으며, 학생회장 선출에 관한 비밀, 보통, 평등한 투표 권한을 갖는다.
- ② 학생회장 후보는 본회의 정회원 중 4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한다. 단, 편입생의 경우 본회의 정회원 중 2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 한다.
- ③ 다음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 개인의 과실로 인한 교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자
 - 재학기간 중 개인 사유로 인해 형사법적인 책임을 갖는 자
 - 선거일정이 포함에 포함된 학기에 휴학한 자

제74조 [재선거 및 보궐선거]

- ① 다음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 당해 학생회장 선거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
 - 학생회장 선거의 당선인이 없는 경우
 - 학생회장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경우
 - 학생회장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선거권·피선거권 박탈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 학생회장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선거시행세칙」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새로 발견되어 후보 자격이 박탈된 경우
 - 그 외 「선거시행세칙」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학생회장이 탄핵 등의 이유로 궐위된 때 잔여 임기가 180일이 넘으면 궐위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궐선거의 시행 일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③ 보궐선거 시행 일정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75조 [선거시행세칙]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8장 약학대학 인수인계위원회

제76조 [구성 및 해소]

- ① 학생회장 당선인은 업무 인수를 위해 당선 공고일로부터 48시간 이후부터 약학대학 인수인계위원회(이하 인수인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단, 재선거·보궐선거로 당선되었을 경우 설치하지 아니한다.

- ② 인수인계위원회는 후임 학생회장 임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해소한다.

제77조 [업무]

인수인계위원회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집행위원회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 전임 학생회장과 집행위원회의 주요 사업 분석
- 후임 집행위원회 정책의 기본방향 수립을 위한 준비
- 기타 학생회장과 집행위원회 업무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78조 [모집 및 인선]

- ① 학생회장 당선인은 인수인계위원회의 집행국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는 차기년도 학생대표자회의 인준을 얻어야 한다.
- ② 각 집행국의 집행국장 및 집행국원을 모집 및 인선은 공개를 기본적인 원칙으로 한다.
- ③ 인수인계위원회 활동기간동안 모집 및 인선이 완료되어야 한다.

제9장 회칙 개정

제79조 [발의]

회칙 개정의 발의는 다음 중 하나 이상 충족 시 가능하다.

- 학생대표자회 대의원 2/3 이상의 발의
- 집행위원회 1/2 이상의 발의
- 회원 1/2 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제80조 [회칙개정위원회]

- ① 회칙 개정에 관한 의결이 나면 7일 안에 회칙개정위원회를 구성해야하며, 학생대표자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 ② 회칙개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단, 필요에 따라 학생대표자회의 의결로 회칙개정위원의 추가 인준 받을 수 있다.
 1. 학생회장
 2. 집행위원회 위원 중 2인
 3. 동아리 대표 1인
 4. 위의 세 가지 항목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학과별 2인
- ③ 회칙개정위원회에 참여하는 동아리 대표 1인은 약학대학 동아리연합회 소속 동아리 회장들로 구성한다.
- ④ 회칙개정위원회 위원들은 제2항의 자격 중 하나의 자격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
- ⑤ 회칙개정위원회에 추가적으로 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생대표자회의 의결을 통해 회칙개정위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81조 [심의]

- ① 회칙개정안이 발의되기 전에, 학생대표자회 또는 공청회를 열어 심의를 받도록 한다.
- ② 공청회는 개의 7일 전까지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공청회에는 회칙개정위원회 위원 3인 이상 참여하여, 개정된 회칙에 대한 질문 및 설명을 해야 한다.
- ④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하여 회칙개정위원회는 회칙개정안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82조 [공고 및 의결]

- ① 회칙개정안이 발의되면, 학생회장은 개정안을 즉시 공고해야 한다.
- ② 회칙개정안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학생총회를 통해 의결한다.

제83조 [공포]

- ① 개정된 회칙은 학생회장이 즉시 공포하여야 한다.
- ② 개정된 회칙은 공포 후 48시간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제10장 약학대학 징계위원회

제1절 총칙

제84조 [목적]

- ① 약학대학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는 본 회 내에서 징계가 필요할 경우, 세부적인 대응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징계는 최후 수단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개개인의 잘못에 비례하여 이 회칙에서 규정한 징계 수위에 맞추어 처분되어야 한다.

제85조 [대표자와 각 기구의 책임]

학생회장, 집행위원회 위원, 학생대표자 대의원 등은 징계 관련 사무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2절 사건관계자 및 징계심의대상자

제86조 [사건관계자의 권리]

- ① 사건관계자는 개인정보, 신변 등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사건관계자는 해당 징계에 대한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 또는 해당 징계 사무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③ 사건관계자는 조사를 받은 후 조사내용 확인, 검토를 위한 조서열람을 징계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징계위원회는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단, 열람은 본인의 조서에 제한한다.
- ④ 사건관계자는 조서 내용이 허위로 기재되었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할 경우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7조 [사건관계자의 의무]

- ① 사건관계자는 해당 징계 관련 정보 및 열람한 조서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② 사건관계자는 해당 징계 처리 절차에 본인의 양심에 따라 협조를 하여야 한다.
- ③ 사건관계자는 다른 사건관계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야기하지 아니할 의무를 진다.

제88조 [징계심의대상자의 권리]

- ① 징계심의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아니할 권리
 - 자신을 변호할 권리
 - 개인정보, 신변 등을 보호받을 권리
 -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단, 대리인은 회원 중 1인으로 제한한다.)
- ② 징계심의대상자는 학생총회의 의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비공식적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89조 [징계심의대상자의 의무]

- ① 사건관계자는 해당 징계 관련 정보 및 열람한 조서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② 징계심의대상자는 해당 징계 처리 절차에 본인의 양심에 따라 협조를 하여야 한다.
- ③ 징계심의대상자는 사건관계자에 대한 보복 및 2차 피해를 야기하지 아니할 의무를 진다.

제3절 절차

제90조 [절차]

징계위원회 징계 처리 절차는 다음의 순서에 의한다.

- 신고 및 접수
- 징계위원회의 구성
- 징계판단 및 결과의 보고
- 징계의 의결
- 이의제기
- 공고 및 집행

제91조 [신고 및 접수]

- ① 본 회의 회원은 징계 요청에 대한 신고를 학생대표자회에 할 수 있다.
- ② 학생대표자회의 의장은 징계 필요성이 있는 사건이 보고될 경우,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 신고를 접수하여야 한다.
- ③ 사건을 접수할 때, 신고인에 대한 정보 및 신변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92조 징계위원회 지위 및 의무]

- ① 징계위원회는 학생대표자회에 신고된 사건에 대하여 학생대표자회가 일정 권한을 위임한

기구로, 징계 사건을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한 징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 ② 징계위원회는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 해당 징계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할 의무
 - 해당 징계 사건에 대한 정보를 보호해야 할 의무

제93조 [징계위원회 구성 및 인준, 해임 및 해산]

- ① 징계위원회의 구성과 인준은 징계 요청에 대한 신고 및 접수가 이뤄진 날로부터 5일 안에 학생대표자회를 통해 의결해야 한다.
- ② 징계위원회는 다음의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학생대표자회 중 학년별 각 1인
 - 집행위원회 1인
- ③ 제2항의 대의원 중 사건과 연루된 자는 제외한다.
- ④ 징계위원회는 위원 중 한 명을 위원장으로 선출한다. 단, 징계심의대상자와 같은 학년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장이 될 수 없다.
- ⑤ 징계위원회 위원은 사건 처리 과정 중 징계위원회 논의를 통해 재적위원 중 3인 이상의 동의로 해임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결손은 학생대표자회 논의를 통해 지체 없이 충원한다.
- ⑥ 징계위원회 징계 절차가 모두 종료된 경우, 해당 징계위원회는 해산한다.

제94조 [징계위원회 업무]

- ① 징계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해당 징계 사건의 징계사유 판단
 - 징계사유 판단 결과의 보고
 - 학생대표자회로의 징계 요구
 - 징계 관련 모든 과정의 기록
 - 그 외 징계위원회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는 업무
- ② 제1항에서 해당 징계 사건의 징계사유 판단은 집행위원회 업무 불이행 또는 학생대표자회 및 집행위원회의 업무를 제한할 정도의 피해를 준 경우로 제한한다.
- ③ 집행위원회는 구성 후 3주간 활동할 수 있다. 단, 추가적인 활동이 필요할 경우, 학생대표자회의 의결을 통해 최대 7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 ④ 제1항의 징계 과정 기록은 제108조 제1항을 따라 제작한다.
- ⑤ 제1항에서 징계 요구 안건이 학생대표자회에 상정된 경우 학생대표자회는 해당 안건의 학생총회로의 상정 여부를 심의한다. 이 때 학생총회의 상정이 부결된 경우 징계위원회는 7일 안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절 징계판단 및 결과의 보고

제95조 [징계판단 및 결과의 보고]

- ① 징계위원회는 다음에 대한 징계판단 권한을 가진다.
 - 사건 경위

- 사건관계자 및 징계심의대상자의 진술
- 사건의 증거
-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판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건관계자 및 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 또는 본 회의 의결 및 집행기구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판단이 완료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학생대표자회에 결과를 보고해야 하며, 이 때 보고 자료는 제110조 9항을 따른다.

제96조 [징계의 요청]

- ① 징계위원회는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대표자회에 징계 요구 안건을 제안할 수 있다.
- ② 징계 요구 안건을 제안 받은 학생대표자회는 조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단, 추가 조사의 경우, 7일 이내로 완료하여 제110조 제1항에 따라 학생대표자회에 징계 요구 안건을 다시 상정하여야 한다.
- ③ 징계 수위의 경우 학생대표자회에서 결정하며, 최종 의결은 학생총회에서 한다.

제5절 징계 및 이의제기

제97조 [징계]

- ①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경고
 - 공개 사과문 게재
 - 선거권·피선거권 박탈
 - 대표자의 경우 대표자 직위 해제
- ② 제1항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징계 수위는 학생대표자회에서 논의를 통해 학생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 ③ 징계의 경우, 그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98조 [학생대표자회의 징계 심의·의결]

- ① 학생대표자회는 제96조에 의해 상정된 징계 요구 안건을 3일 이내로 심의한다.
- ② 학생대표자회는 제1항에 의해 심의된 징계 요구 안건을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 ③ 학생대표자회는 제2항에 의해 의결된 징계 요구 안건을 의결로써 5일 안에 학생총회에 상정할 수 있다.
- ④ 제2항과 제3항의 의결에서 징계위원회 위원은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99조 [자료의 사전 보고]

- ① 제98조 제3항에 의한 안건이 논의 안건으로 상정된 학생총회의 의장은 해당 학생총회 개의 3일 전까지 학생총회의 회원들의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97조에 의해 학생대표자회에서 보고된 결과를 학생총회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배포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배포되는 자료는 징계의결요구서로 제한한다.

제100조 [사건관계자와 징계대상자의 출석]

- ① 해당 징계 사건의 징계대상자는 제93조에 의한 해당 안건이 진행되는 학생총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 ② 해당 징계 사건의 사건관계자는 제93조에 의한 해당 안건이 진행되는 학생총회에 필요 시 출석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의해 출석을 요구받는 자는 본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을 출석시킬 수 있다. 단, 해당 대리인의 출석은 학생총회 개의 3일 전까지 학생총회 의장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 ④ 제1항에 의해 출석을 요구받는 자는 학생총회 3일 전까지 출석통지서를 수령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출석통지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101조 [학생총회의 징계 요구 안건 심의 절차]

- ① 학생총회의 제98조 제3항에 의한 징계 요구 안건의 심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 사건 경위·결론 보고 및 제100조 제3항에 의한 징계 요구 안건 심의
 - 증인 및 참고인 신문
 - 찬반 토론
 - 징계심의대상자 또는 징계심의대상자 대리인의 최후변론
 - 징계의 의결
- ② 제1항의 진행에 있어서 필요 시 징계대상자와 그 대리인은 의장의 동의를 구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③ 학생총회는 자료 부실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과반수 출석과 출석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위원회의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단, 재조사의 경우, 17일 이내로 완료하여, 제98조 제1항에 따라 학생대표자회에 징계 요구 안건을 다시 상정하여야 한다.

제102조 [징계 수위의 최종결정]

학생총회는 제98조에 의한 학생대표자회의 징계 요구 안건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03조 [학생총회의 징계 의결 및 표결방법]

- ① 학생총회 의장은 표결로써 징계에 대한 의결을 진행한다. 이 때,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의결에서 징계위원회 위원은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 ③ 제2항에 관한 의결은 반드시 무기명투표로 표결하여야 한다.

제104조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

- ① 제101조의 과정에 따른 징계사항이 의결되면 징계의 의결 시로부터 7일의 이의제기 기간을 둔다. 이의제기 기간 동안 징계가 결정된 징계대상자는 소명서를 작성하여 학생대표자회에 징계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의를 요청 받으면 학생대표자회는 이의가 제기된 당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에 대한 재심의를 시행할 경우 학생대표자회는 징계에 대해 다음 중 하나를 의결할 수 있다.
 - 징계 수위 유지의 경우, 학생대표자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 하향조절 및 취소의 경우, 학생총회의 재의결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단, 의결요건은 제105조 1항을 따른다.

- ③ 징계에 대한 이의제기는 최대 1회까지 가능하며 1회의 이의제기 이후에 확정된 징계에 대해서는 집행이 확정된다.

제105조 징계의 집행

- ① 징계의 의결 시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징계가 확정된 것으로 한다.
- ② 학생대표자회 혹은 학생총회를 통해 의결된 징계는 확정된 후 7일 이내에 집행한다.
- ③ 징계대상자는 징계에 대해 승인했다는 증거로서 징계집행확인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제106조 징계의 공고

징계집행통지서를 수령하고 징계집행확인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생대표자회는 징계의 사유, 내용, 기간을 공고한다.

제6절 징계 과정의 기록

제107조 징계 과정의 기록 작성의 원칙

- ① 징계위원회는 구성 이후 모든 징계 관련 과정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징계 관련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 ② 징계 과정의 기록은 독자의 이해와 가독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제108조 징계 과정 기록의 작성

- ①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된 후 징계 과정의 기록은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가진다. 단, 징계를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 이후 과정에 대해선 기록하지 않는다.

- 표지
- 진술서 및 증거자료
- 징계위원회 회의록
- 학생대표자회 회의록
- 징계의결요구서
- 출석통지서
- 출석통지확인서
- 학생총회 징계의결서
- 징계집행통지서
- 징계집행확인서

- ② 표지는 징계호수, 제목, 징계접수일자, 징계담당기구의 이름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진술서는 사건관계자 및 징계심의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며 진술 내용에 거짓이 없음에 대한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징계위원회 및 학생대표자회 회의록은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 회의체 및 차시
 - 회의 시작 일시
 - 회의 장소

- 해당 회의의 구성원 명단 및 서명
 - 해당 회의와 관련된 회칙 명시
 - 각 안건 제목 및 내용
 - 서기의 이름(서기가 교체될 경우, 교체시점을 명시한다.)
 - 발언자의 성명·소속
 - 발언자의 발언 내용
- ⑤ 징계의결요구서는 학생총회를 대상으로 하며, 상정할 징계심의대상자의 징계 수위와 근거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⑥ 출석통지서는 심의 주요 내용 및 학생총회 일시 및 장소를 포함하여야 하며, 출석통지 확인서는 출석통지서 수령 날짜와 출석을 요구받는 자의 서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⑦ 학생총회 징계의결서는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 학생총회 일시
 - 징계심의대상자의 인적사항(이름, 학번)
 - 징계 사유 및 심의 주요 내용
 - 학생총회 투표 기록
 - 결론
 - ⑧ 징계집행통지서 및 확인서는 1부 인쇄하여 징계의결 후 3일 내에 징계대상자에게 전달 하여야 하며, 징계집행확인서는 징계대상자의 서명을 받아 파일로 보관하고 원본은 파기 한다.
 - ⑨ 학생대표자회 및 학생총회에 제출되는 보고자료는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표지, 진술서 및 증거자료, 징계위원회 회의록
 - 학생총회의 경우 학생대표자회 회의록 및 징계의결요구서를 추가로 포함한다.
 - ⑩ 제1항의 회의록은 징계위원회 위원들의 검토를 마쳐 회의 후 3일 내로 완성되어야 한다.
 - ⑪ 제1항과 제9항의 기록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사건과 관계되어 필수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개인정보 수락을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 ⑫ 제1항과 제9항의 기록은 열람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적인 내용을 기재할 수 있다.

제109조 [징계 과정 기록물 열람 권한 및 보관]

- ① 제108조 제1항의 징계 기록의 열람 권한은 다음으로 제한하며 징계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한정한다. 단, 필요시, 학생대표자회의 의결을 통해 열람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
 - 해당 사건의 징계 위원회 위원
 - 해당 사건의 사건 관계자
 - 해당 사건의 징계 심의 대상자
 - 다음 징계 위원회 위원
- ② 제108조 제1항과 제9항의 기록물은 파일로 학생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가 계속해서 보관하며 열람 및 유출 금지에 대한 의무를 지닌다.
- ③ 징계 과정에서 발생한 기록물은 제111조 제5항을 제외하고 무기한 보관을 원칙으로 하나, 특정 사유 발생 시 학생대표자회를 통해 보존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제108조 제1항과 제9항의 징계 기록 중 다음은 징계심의대상자의 인적사항을 삭제하여 보관해야 한다.

- 징계의결요구서
 - 학생총회 징계의결서
- ⑤ 제108조 제1항과 제9항의 징계 기록 중 다음은 징계심의대상자의 졸업과 함께 파기해야 한다.
- 표지
 - 진술서 및 증거자료
 - 징계위원회 회의록
 - 학생대표자회 회의록
 - 출석통지서
 - 출석통지확인서
 - 징계집행통지서
 - 징계집행확인서

부칙

이 세칙은 공포 후 48시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